

제2부 선거기사 심의의결 현황

제1장 결정의 내용별 분석

1. 경 고
2. 주 의

제2장 매체별 분석

1. 중앙일간신문
2. 지방일간신문
3. 주간신문, 주간지, 통신

제3장 심의대상기사의 유형별 분석

1. 여론조사
2. 선거기사
3. 제 목
4. 사 진

제4장 위반유형별 분석

1. 공정성·형평성
2. 여론조사
 - 가. 보도요건미비
 - 나. 결과보도금지
3. 상업광고제한

제1장 결정의 내용별 분석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는 자체심의와 피해자들의 시정요구 및 반론보도청구심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94건에 대해 주의, 경고 및 기각결정을 내렸으며 위반 94건중 경고는 58건, 주의는 35건으로 경고가 61.7%를 차지했다.

경고 및 주의결정을 받은 93건의 기사를 위반유형별로 보면

- ① 공정성 및 형평성위반이 76.3%인 71건
- ② 여론조사보도 요건미비가 15.1%인 14건
- ③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위반이 7.5%인 7건
- ④ 상업광고제한위반이 1.1%인 1건이다.

중앙일간신문들은 1건을 제외한 11건이 여론조사보도 요건미비 및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조항을 위반한 반면 주간신문들은 15건이 모두 공정성 및 형평성조항을 위반한 것이었으며 지방일간신문들도 공정성 및 형평성위반이 전체 64건의 85.9%인 55건을 차지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특정후보 및 특정당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공정성 및 형평성을 크게 위반한 기사에 대해서는 경고결정을 내렸으며 특정후보 및 특정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기사를 작성하여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했다라도 기사크기가 비교적 작고 겉으로 드러나는 의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주의 결정을 내렸다.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공표금지 조항을 위반한 기사 7건 중 6건에 대해서는 경고 결정을 내렸으며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여론조사 요건을 충분히 갖추어 보도하지 않은 기사 14건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결정을 내렸다.

1. 경 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를 통해 심의기준을 위반한 총 93건의 기사중 62.4%인 58건에 대해 경고결정을 내렸다.

매체별로 보면 중앙일간신문이 4건(6.9%), 지방일간신문 42건(72.4%), 중앙주간신문 5건(8.6%), 지방주간신문 7건(12.1%)이었다. 중앙일간신문은 12건의 주의·경고결정중 경고가 25%로 주의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비해 지방일간신문은 총 64건의 결정중 경고가 65.6%로 주의보다 많은 것이 특징이다. 주간신문도 15건 중 80%인 12건이 경고결정을 받았다.

이처럼 중앙일간신문에 비해 지방일간신문에 대한 경고결정 비율이 높았던 것은 지역 정서에 크게 좌우된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양상을 짐작케 해준다. 각 지역에 근거를 둔 지방신문들은 지역 정서에 부합

되는 후보들이나 특정당들을 편파적으로 집중 부각시켜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를 보도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자체심의회에서 경고를 많이 받은 매체들은 모두 지방신문이었다. 경인매일과 전북제일신문이 각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일보 충청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가 각 3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으며 경남신문 경상일보 광주타임스 일간경북 전주일보 한빛일보 주간현대가 각 2건을 차지했다.

경고 결정을 받은 기사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①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가 51건으로 경고의 대부분(87.9%)을 차지했으며 ②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조항을 위반한 기사가 6건(13.4%) ③ 상업광고금지를 위반 기사는 1건이었다.

경고결정을 받은 기사의 유형별 특색은 다음과 같다.

가 .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사례 : 51건 <표1>

- (1) 주의대상 기사 중 편파성의 정도가 심한 경우
- (2) 특정후보나 특정당에 관한 기사를 한면 전체에 걸쳐 게재한 경우
- (3) 특정후보나 특정당에 관한 기사를 여러면에 걸쳐 보도한 경우
- (4) 특정후보나 특정당에 관한 동일한 유형의 기사를 수차례 보도한 경우
- (5) 편파적인 기사와 함께 특정후보의 개인사진이나 특정당의 활동상을 담은 사진만을 게재한 경우
- (6) 특정후보나 특정당에 관한 일방적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경우
- (7) 특정후보를 치켜세우면서 그 경쟁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한 경우
- (8) 후보자를 격려하거나 지지하는 의도가 겉으로 심하게 드러난 경우
- (9)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를 오히려 억울한 '희생양'인 것처럼 두둔하며 지역 정서를 자극하여 결과적으로 선거 운동을 도와 준 경우

<경고>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기사

<표1>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0 자심 5	충 청 일 보	2000. 2. 28	9면 전면	고비용정치구조 이제는 바꾸자
2000 자심 17	한 빛 일 보	2000. 3. 6	3면 전면	충북 도약 위해 3선의 힘찬 도전
2000 자심 20	충 청 일 보	2000. 3. 8	14면 전면	부패정치 청산 선봉에 서겠다
2000 자심 41	충 청 일 보	2000. 3. 29	12면 전면	고향 키우는 '힘있는' 일꾼 되겠다
2000 자심 49	대 전 일 보	2000. 3. 18	1면 2면 4면	지역발전·내각제 쟁점화 대전 서울 남재두씨 민주 "망국적 지역주의 청산"역설
2000 자심 50	전북도민일보	2000. 3. 15	3면	개혁 이미지 살리는 역할 큰 몫
2000 자심 51	전북도민일보	2000. 3. 20	4면	"더 이상 소지역주의는 없다"

안건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목
2000 자심 52	전북일보	2000. 3. 17	2면 3면 4면	"실업·농어촌 부채 해결 앞장" 여영입 강현욱의원에 각계 3명 도전 "지역발전·정권 재창출에 헌신"
2000 자심 53	전북일보	2000. 3. 18	4면 5면	합류 시너지효과 '기대' 상승세 탄 조의원 희색 "정책 중심으로 선거운동 펼칠터"
2000 자심 54	남원민보	2000. 3. 8	3면	탈당하면서 입당 운운... 원칙없는 정치인
2000 자심 58	제주일보	2000. 3. 19	1·2면 3면 5면 15~18면	"정부 견제로 국가 발전" D-25 한나라당 정기 대회 "이번 총선은 중간 평가의 장" 한나라당 대선거대책위 현판식과 인터뷰
2000 자심 63	전북일요시사	2000. 3. 19	12면 13면	논·발두령... 소박한 시민정치인 "여당 압승만이 정치불안해소"
		2000. 3. 26	8, 10, 11, 13면	논·발두령... 소박한 시민정치인 "여당 압승만이 정치불안해소"
2000 자심 64	전남일보	2000. 3. 16	1면 4면	바뀌·바뀌속 '무소속 돌풍'거세 예상 넘어 '바뀌' 민심 확산에 당혹감
		2000. 3. 18	1면 3면	후보이미지 심기 '기발' '유권자 심판 운동' 광주·전남 확산
		2000. 3. 20	1면 5면	유권자 선거혁명시동 시민 연대의 낙선투어
		2000. 3. 21	1면 3면	정치개혁 '버스타어' 시도민 큰 호응 '선거 연대의 낙선투어'
		2000. 3. 23	3면	'낙선 운동' 성패 걸린 최대 격전지
		2000. 3. 24	1면 5면	무소속이 민주당 앞서 광주·전남 관심 선거구 6곳 여론조사
2000 자심 68	중부매일	2000. 3. 25	12면	"힘있는 야당의 무공해 정치인"
2000 자심 69	한빛일보	2000. 3. 25	7면	"뚝심·배짱으로 서민 삶 향상 약속"
2000 자심 70	일요시사	2000. 3. 26	10면 20면 62·63면	'밀실 공천희생양', '관악일꾼'으로 명성 무선이동전화 대중화 이끈 '016 성공신화' 주역 IMF 완전 극복 위해 디지털화
2000 자심 71	주간현대	2000. 3. 26	8면 9면	무소속 강운태 강세 ... 호남 이번 조짐 무소속 박주선 "호남이 키울 인물로 부상"
2000 자심 77	경인매일	2000. 3. 30	6·12면	총선 승리를 향한 '출정식'
2000 자심 79	신경북일보	2000. 3. 29	6면	이종용 위원장 후보등록 후 급거 상경

안건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목
2000 자심 81	한라일보	2000. 3. 25	2면	법에 의한 통치로 수권정당 달성
		2000. 3. 27	5면	원희룡 변호사 출판기념회, "국민 바라는 정치할터"
		2000. 3. 28	5면	원희룡 위원장 후원회 성황
2000 자심 95	광주타임스	2000. 4. 1	3면	'태평양' 건너 선거 지원
2000 자심 96	경기도민일보	2000. 3. 31	1면	한나라, 인천지역 총공세
2000 자심 97	경인매일	2000. 4. 1	3면	"송탄을 되찾자" 독립선언!
2000 자심 98	대전일보	2000. 4. 3	5면	"내가 맹주" 이총재 - JP 총청권 불꽃 격돌
2000 자심 99	주간내일신문	2000. 3. 29	15면	"한화갑만 만나겠다", '차세대 유망 정치인'과 친분위해
2000 자심 100	주간전북남서부내일신문	2000. 3. 29	7면	"한우와 쌀은 지켜야 한다"
2000 자심 101	일요서울	2000. 4. 6	11면	민주당 관련자들의 병역 의혹 자료
2000 자심 103	경남신문	2000. 4. 3	2면	"총선 후 당권에 도전"
2000 자심 105	광주타임스	2000. 4. 5	2면 3면	민주당, 무소속 잠재우기 총력 '무소속 입당 절대 불허' 강조
2000 자심 106	일간경북	2000. 4. 4	2·3면 4면	한나라당 이회창 관련 사진 한나라당 선거 대책 회의 사진
2000 자심 107	전북일보	2000. 4. 5	6면	"도내 전지역 석권 제 1당 확보 총력"
2000 자심 108	전북제일신문	2000. 4. 5	5면	"누가 여당? 야당" 아리송
2000 자심 109	전주일보	2000. 4. 5	2면	"지역발전·현안 해결에 최선"
2000 자심 111	주간고향신문	2000. 3. 29	3면	4·13 총선 등록 실시
2000 자심 112	새거제	2000. 4. 6	5면	"경험과 역량 갖춘 김기춘 후보 지지"
2000 자심 113	리빙타임즈	2000. 4. 4	1면	오성수 전 시장 '가석방'
2000 자심 117	경상일보	2000. 4. 8	1면 3면	'김태호 죽이기' 논란 "한치 잘못 있다면 정계 은퇴"
2000 자심 118	경상일보	2000 자심 118	1면 5면	'김태호 죽이기' 중단 촉구 "정치적 결정" 음모론에 무게, "김태호 살리자" 1천여 지지자 연호
2000 자심 123	경인매일	2000. 4. 7	3면	"저에게 한번의 기회를 주세요"
2000 자심 125	광주매일	2000. 4. 10	2·3·4면	3개면에 민주당 선거운동 관련 사진 중점 게재
2000 자심 126	대전일보	2000. 4. 7	5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사진
2000 자심 127	일간경북	2000. 4. 6	1면	이회창 총재 구미·안동·경산 공략, 한나라 여권 위기 조장론 제기, 박근혜후보 달성경찰서 항의방문, 민주당 김종권후보 즉각 수사 촉구
2000 자심 129	주간전주전북내일신문	2000. 4. 5	7면	"개혁적인 젊은이가 책임져야"

안건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목
2000 자심 130	전북제일신문	2000. 4. 8	3면	'제1당' 도민손에... '반짝 구매 작전'
2000 자심 131	전북제일신문	2000. 4. 10	4면	구제역방역 활동 참여 김원기 후보 농민 아픔 함께
2000 자심 132	전주일보	2000. 4. 8	3면	미래 향한 일면 협력·일면 경쟁
2000 자심 133	주간현대	2000. 4. 9	8·9면	이영일의 정치 실험
2000 자심 134	경남신문	2000. 4. 11	5면	권해옥 위원장 지지 호소
2000 자심 135	경인매일	2000. 4. 12	3면	하루 10만원 선거비용 전부 점심은 도시락... 당선장담
2000 자심 136	전북도민일보	2000. 4. 13	4면	"경제도약이나, 좌절이나 판가름"
2000 자심 138	전북제일신문	2000. 4. 13	6면	"도민들이 밀어 줘야 개혁 완수"

나.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례 : 6건 <표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제①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①항에 의하면 언론사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사들은 이번 제 16대 총선보도를 할 때 이 규정을 비교적 잘 지킨 편이었으나 중앙일간신문 4개사와 지방일간신문 2개사가 이 규정위반으로 경고 결정을 받았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위반기사에 대해서는 7건의 위반 기사를 1건을 제외하고는 주의보다 무거운 경고결정을 내렸다.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위반 기사중 유일하게 주의 결정을 받은 '영남투데이'의 '총선 부동산을 잡아라' 제목의 기사는 어떤 특정후보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를

<경고>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표2>

안건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목
2000 자심 72	국민일보	2000. 3. 29	2면	'뒷심' 부족한 386 후보
2000 자심 73	매일경제	2000. 3. 28	45면	민국당 주춤 한나라 회복, 민주아성에 무소속 돌풍
2000 자심 75	충도일보	2000. 3. 28 2000. 3. 30	1면 3면 4면	자민 8·민주 2 확실히 "a의석 잡아라"전세역전관건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
2000 자심 76	제민일보	2000. 3. 28	4면	제주 출신 배우자 둔 총선 후보들 '선전'
2000 자심 102	중앙일보	2000. 4. 6	5면	현역들 뒷심 만만찮아
2000 자심 115	한겨레	2000. 4. 10	1·3면	4·13 총선 D -3 유권자여론조사

위반한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각당의 관세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경고보다 가벼운 제재에 그쳤다. 반면에 다른 위반기사 6건은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결과를 후보자들을 거명해가며 보도하거나 각당간의 우열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쳐 경고결정을 받았다.

이번 총선거사 보도에서 중앙일간신문이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를 위반한 건수가 지방일간신문보다 많은게 특색이다. 한편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면서 여론조사요건을 보도하지 않은 기사들은 모두 경고보다 가벼운 주의 결정을 받았다.

다. 상업광고 제한조항을 위반한 사례 : 1건 <표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93조(탈법방지법에 의한 문서·도서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②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7조(상업광고의 제한) 제①항에 의하면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투표일까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에 대한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16대 국회의원선거 보도에서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이 규정을 잘 지켰으나 경도일보만 유일하게 위반, 경고결정을 받았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되고 있는 경도일보는 2000년 3월 25일자 5면에 '용마루에 뜨는 달'이라는 민주당 경남 밀양·창녕지역구 후보의 자전적에세이집 광고를 게재했다.

<경고> 상업광고 제한 위반

<표3>

안건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목
2000 자심 65	경도일보	2000. 3. 25	5면	'용마루에 뜨는 달' 서적 광고

2. 주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를 통해 심의기준을 위반한 총93건의 기사중 37.6%인 35건에 대해 주의결정을 내렸다.

매체별로 보면 중앙일간신문이 22.9%인 8건, 지방일간신문이 62.9%인 22건, 통신이 1건, 중앙과 지방의 주간신문 3건, 주간지 1건 등이다.

주의를 가장 많이 받은 매체는 전북도민일보로 4건이었다. 경향신문은 중앙일간지중 가장 많은 3건의 주의를 받았고 지방일간신문중 국도일보 영남투데이도 각 3건의 주의 결정을 받았다.

주의결정을 받은 35건의 기사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가. 공정성 및 형평성조항을 위반한 기사가 20건(57.1%)으로 가장 많고 나. 여론조사 결과 보도요건 미비 기사가 14건(40%)을 차지했으며 다.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위반기사가 1건이었다.

주의결정을 받은 기사의 유형별 특색은 다음과 같다.

가.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 : 20건 <표4>

경고결정을 받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기사보다 위반 정도가 약한 기사에 대해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특정후보 및 특정당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기사를 작성하였으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나. 여론조사결과 보도요건미비 기사 : 14건 <표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108조 제③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8조 제②항에 의하면 언론사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한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그 결과와 함께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16대 국회의원 선거보도 때 중앙지로는 중앙일보, 지방지로는 중부일보가 요건을 충실히 공개해 보도했다. 두 신문은 특히 질문내용등을 아주 상세히 공개해 여론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다.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위반기사 : 1건 <표6>

여론조사결과보도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기간 중에 대체적인 관세분석을 했으나 그 분석이 여론조사에 근거한 것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사에 대해서는 경고보다 가벼운 주의결정이 내려졌다.

〈주의〉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기사

〈표4〉

안건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목
2000 자심 4	충청일보	2000. 3. 24	1·3면	역량 있는 지역 중진 지키자, 정치인의 저버린 행태 공분
2000 자심 8	국도일보	2000. 3. 3	3면	자민련 김학원 의원 부여 총선 승리다짐- JP 아성 업고 승승장구
2000 자심 36	일요시사	2000. 3. 27 2000. 3. 7	11면 4면	박주선 '텃밭'에 무소속 깃발(?) "역사에 남는 대통령 위해 못다한 개혁에 앞장"
2000 자심 39	전북도민일보	2000. 3. 10	3면	안전시설 확충 위해 예산 확보 전력
2000 자심 40	전북도민일보	2000. 3. 10	1면	민주 장성원 의원 의정 보고회
2000 자심 44	매일경제	2000. 3. 14	6면	간판 인물 부재... "뚜껑 열어 봐야"
2000 자심 47	중부매일	2000. 3. 16	2면	4·13 총선 이모저모
2000 자심 56	한라일보	2000. 3. 16 2000. 3. 22 2000. 3. 29	2면 2면 9면	원희룡변호사 위원장 '닭은꼴 이력' 화제 제주출신원희룡변호사사무실 열고 본격채비
2000 자심 59	경남신문	2000. 3. 20	4면	민주당, 한나라당, 민국당 지구당대회 관련 기사
2000 자심 60	국도일보	{2000. 3. 20	1면	JP 충청권 수성 전력
2000 자심 61	주간울산내일신문	2000. 3. 21	13면	종반 갈수록 JP바람 거세 진다
2000 자심 62	정읍신문	2000. 3. 1	2면	4·13 총선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
2000 자심 67	영남투데이	2000. 3. 25	3면	4·13 향해 뛴다
2000 자심 80	전북도민일보	2000. 3. 29	2면	고산중 강당 완공
2000 자심 110	호남신문	2000. 4. 4	3면	'낙선 명단' 곳곳서 기습 쓸고... 최고...
2000 자심 119	영남투데이	2000. 4. 11	14면	"야 후보 낙선 공작" 의혹
2000 자심 120	중부매일	2000. 4. 10	1·2면	김태호후보 식발 투쟁
2000 자심 124	국도일보	2000. 4. 8	3면	"DJ 정권 축산 정책 더는 못 믿어"
2000 자심 128	전북도민일보	2000. 4. 8	1면 5면	투표율 높이기 '사활' "한표 행사가 애국" 투표율 제고 안간힘
2000 자심 137	전북일보	000. 4. 12	5면	"도내 최다 득표 대결 치열"

〈주의〉 여론조사결과 보도요건 미비기사

〈표5〉

안건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목
2000 자심 21	제주일보	2000. 3. 5 2000. 3. 7	2면 2면	4·13총선 초반 판세
2000 자심 22	국민일보	2000. 3. 7	2면	쉽지 않은 DJ 저격수 저격
2000 자심 24	경도일보	2000. 3. 7	2면	여·야 이모저모
2000 자심 25	대전일보	2000. 3. 8	3면	"싸늘이·경합" 우위경쟁치열
2000 자심 26	인천일보	2000. 3. 8	4면	386세대 대 종진 한판 대결
2000 자심 27	경향신문	2000. 3. 8 2000. 3. 9	4면 4면	'제1당 승부처' 막상막하 혼전 한나라 독주... 민국은 '아직은 미풍'
2000 자심 28	전남매일	2000. 3. 9	4면	'6선고지' 무소속 거센 도전
2000 자심 29	뉴스피플	2000. 3. 16	18~20면	서울 민주 '상승' 한나라 '주춤'
2000 자심 30	경향신문	2000. 3. 10, 11, 13	각 4면	4·13 총선 초반 판세 시리즈
2000 자심 31	국민일보	2000. 3. 11.	1면 3면	수도권 민주·한나라 2파전 '2위는 없다' 숨가쁜 '총선 경주'
2000 자심 32	연합뉴스	2000. 3. 4~8 2000. 3. 10	여러면	4·13 총선 초반 판세 점검
2000 자심 43	경향신문	2000. 3. 14	4면	'남야 북여' 구도... 민주 '2배 우위'
2000 자심 45	문화일보	2000. 3. 14	1면 2면 4면	3당 지역바람 여전...민국 저조 '덧발대결'... 이변은 "아직 없다" "3당 지역 바람 여전"
2000 자심 48	문화일보	2000. 3. 17	1·2면	서울 총선 판세 급변 요동치는 선거판 '수도권 혈투'

〈주의〉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표6〉

안건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목
2000 자심 74	영남투데이	2000. 3. 29	1면	총선 "부동표를 잡아라"

제2장 매체별 분석

자체심의대상매체 총 285개(중앙일간신문 21, 지방일간신문 55, 주간신문 194, 주간지 9, 월간지 5, 통신 1)중 중앙일간신문 6개 매체와 지방일간신문 29개, 주간신문 13개(중앙주간신문 4, 지방주간신문 9) 주간지 1개, 통신 1개 등 모두 50개 매체가 선거기사 심의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지적돼 경고 또는 주의 조치됐다.

이는 17.5%의 비율로서 5.7개 매체 당 1개꼴로 지적된 셈이다.

중앙일간신문은 심의대상 21개 매체 중 6개가 지적돼 28.6%의 비율을 보였고 지방일간신문은 55개 매체 중 29개가 지적되어 52.7%의 비율로 위반, 절반이 넘는 신문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제재 조치된 셈이다.

주간지는 9개 매체 중 1개(11.1%), 중앙주간신문은 9개 매체 중 4개(44.4%), 지방주간신문은 185개 중 9개 매체(4.9%)가 지적되었다. <표1>

지적된 매체 수와 지적건수를 비교해보면 중앙일간신문은 매체 당 평균 2건씩 지적됐고 지방일간신문은 약 2.2건씩 지적 받았다.

중앙주간신문은 매체 당 1.5건씩 지적됐고 지방주간신문과 주간지는 매체 당 1건씩 지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심의대상매체수와 지적매체수 비율

<표1>

매체유형 \ 항목	심의대상 매체수	지적 매체수	비율	비고
중앙일간신문	21	6	28.6%	
지방일간신문	55	29	52.7%	
중앙주간신문	9*	4	44.4%	
지방주간신문	185*	9	4.9%	
주간지	9	1	11.1%	
월간지	5	0	0%	
통신	1	1	100%	
계	285	50	17.5%	

*주간신문의 중앙, 지방 구분은 주 배포지역을 기준으로 한것임.

위반유형별로 분류하면 전체 위반 93건 중 76.3%에 해당하는 71건이 공정성 및 형평성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는 여론조사 보도요건미비가 14회(15.1%),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조항위반이 7건(7.5%)으로 나타나 여론조사관련보도에서 모두 21건 22.6%로 지적되어 그뒤를 이었다. 상업광고 제한조항을 위반한 경우는 1건이었다. 이를 매체유형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표3>과 같다.

지적매체수 대비 지적건수

<표2>

간행별 항 목	지 적 매 체 수	지 적 건 수	대 비	비 고
중앙일간신문	6	12	1 : 2	
지방일간신문	29	64	약 1 : 2.2	
중앙주간신문	4	6	1 : 1.5	
지방주간신문	9	9	1 : 1	
주 간 지	1	1	1 : 1	
월 간 지	1	1	1 : 1	
계	50	93	약 1 : 1.9	

매체유형별 위반내용

<표3>

간행별	구 분		공정성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미비	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상업광고제한
	계					
중앙일간신문	12	1	7	4		
지방일간신문	64	55	5	3	1	
중앙주간신문	6	6				
지방주간신문	9	9				
주 간 지	1		1			
통 신	1		1			
계	93	71	14	7	1	
비 율	100%	76.3%	15.1%	7.5%	1.1%	

1. 중앙일간신문

중앙일간신문(경제지 1개 포함 6개 매체)은 여론조사 결과보도와 관련해서 11건(보도요건미비 7건, 공표금지조항 4건)을 위반해서 거의 대부분(91.7%)이 이 조항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건(8.3%)이 공정성 및 형평성기준에 미흡해서 지적됐다. <표4>

중앙일간신문의 위반유형과 결정내용

<표4>

매체명	항 목	위 반 유 형				결 정	
		공 정 성 형 평 성	여 론 조 사 보도요건미비	여 론 조 사 결과공표금지	상업광고제한	경 고	주 의
경 향 신 문	3		3				3
국 민 일 보	3		2	1		1	2
문 화 일 보	2		2				2
중 앙 일 보	1			1		1	
한 겨 레	1			1		1	
매 일 경 제	2	1		1		1	1
계	12	1	7	4		4	8
비 율	100%	8.3%	91.7%			33.3%	66.7%

개별신문이 지적 받은 상황을 보면 경향신문과 국민일보가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해서 각각 3건의 지적을 받았고 문화일보 역시 여론조사 보도요건미비로 2차례 지적됐다.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은 선거기간중의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조항을 지키지 않아 각각 한차례씩 지적됐는데 실질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선거에 임박해 마지막 판세를 분석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의 경우 4월 6일자 5면 「현역들 뒷심 만만찮아」제목의 기사 내용 중에 ‘안정론’과 ‘견제론’으로 대치된 여야의 지지도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한편 “지지를 5%이내의 치열한 접전”, “오차 범위가 긴 하나 다소 형편이 나아졌다.”, “특정후보들간의 지지를 겨차가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갔다”는 등의 내용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했다.

한겨레신문은 4월 10일자 1면에 「4·13총선 D-3 유권자 여론조사」라는 표시아래 여론조사 결과임을 밝히고 있고 기사내용에서 “한겨레 여론조사팀이 8일 전국유권자 700명을 지역별로 나눠 뽑아 전화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한결과 일반전과가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3.3%가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지지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보였으며...”라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요건도 밝혔다.

경제지 중 유일하게 지적된 매일경제는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위반으로 1건,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1

건 모두 2건에 걸쳐 경고 또는 주의 조치됐다.

매일경제신문의 지적된 기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월 14일자 6면「간판인물 부재 - 뚜껑 열어봐야」 제목의 기사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특정후보에 치우치는 대구경북지역의 관세를 보도한 것과 3월 28일자 45면 “대구 경북지역 「민국당 주춤 한나라 회복」, 호남·제주지역 「민주아성에 무소속 돌풍」”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두 지역의 총선출마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를 풀이한 것 등 2건이다.

2. 지방일간신문

지방일간신문(29개 매체가 지적됨)은 모두 64건을 위반했는데 그 중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55건으로 85.9%를 차지하였고 여론조사 보도요건미비한 경우가 5건으로 7.8%,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위반이 3건으로 4.7%, 상업광고제한조항은 1건(1.6%)으로 나타났다. <표5>

지방일간신문의 개별적인 지적상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지적된 신문은 전북도민일보로 모두 7차례에 걸쳐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에 위반되는 보도를 한 것으로 지적 됐는데 특정후보들의 선거관련 활동이나 민원해결 노력 등을 부각해서 보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3건의 경고에 4건의 주의조치를 받았다.

울산지역신문들은 4월 8일과 4월 10일자에서 합동수사반이 특정후보의 아들 병역의혹과 관련해서 그 후보를 소환 통보한데 대해 후보「죽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야당탄압」 「정치공작」 등 후보의 주장을 2개면에 걸쳐 중점 보도하거나 후보측에 편향되게 기사제목과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두 차례의 경고(경상일보)와 한번의 주의(울산매일) 조치를 받았다.

이 신문들은 이 사건을 둘러싼 보도 이외에는 지적되지 않았는데 인근지역이라 할 수 있는 대구에서 발행되는 「영남투데이」역시 이와 관련되어 주의 조치됐다.

제주에서 발행되는 한라일보는 제주출신으로 타지역인 서울에서 출마한 모 후보의 선거관련활동을 단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그 후보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주의 1회와 경고 1회의 지적을 받았다.

제주의 제민일보는 『제주출신 배우자둔 총선후보들 ‘선전’』제목의 기사에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제주출신 배우자를 둔 남녀 후보 5명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는데 선거결과는 1명을 제외한 4명이 당선함으로써 보도가 거의 적중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선거기사심의의결과는 선거기간중의 여론조사결과 인용보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선거보도의 공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경고조치됐다.

대전의 대전일보와 광주의 전남일보는 신문사 경영과 관련 있는 인사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선거운동을 보도를 통해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선거기사심의의를 통해 부각된 경우이다.

대전일보는 3월 18일자 신문에 모 후보의 관련 보도를 3면에 걸쳐 부각해서 보도하거나 4월 7일자 신문에도 그후보의 선거운동 사진만 크게 게재해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세 차례에 걸쳐 경고를 받았다.

지방일간신문의 위반유형과 결정내용

〈표5〉

매체명	항 목	위 반 유 형				결 정	
		공 정 성 형 평 성	여 론 조 사 보도요건미비	여 론 조 사 결과공표금지	상업광고제한	경 고	주 의
경기도민일보	1	1				1	
경 남 신 문	3	3				2	1
경 도 일 보	2		1		1	1	1
경 상 일 보	2	2				2	
경 인 매 일	4	4				4	
광 주 매 일	1	1				1	
광 주 타 임 스	2	2				2	
국 도 일 보	3	3					3
대 전 매 일	1		1				1
대 전 일 보	3	3				3	
신경북일보	1	1				1	
영남투데이	3	2		1			3
울 산 매 일	1	1					1
인 천 일 보	1		1				1
일 간 경 북	2	2				2	
전 남 매 일	1		1				1
전 남 일 보	1	1				1	
전북도민일보	7	7				3	4
전 북 일 보	4	4				3	1
전북제일신문	4	4				4	
전 주 일 보	2	2				2	
제 민 일 보	1			1		1	
제 주 일 보	2	1	1			1	1
중 도 일 보	1			1		1	
중 부 매 일	2	2				1	1
충 청 일 보	4	4				3	1
한 라 매 일	2	2				1	1
한 빛 일 보	2	2				2	
호 남 신 문	1	1					1
총 계	64 (100.0%)	55 (85.9%)	5 (7.8%)	3 (4.7%)	1 (1.6%)	42 (65.6%)	22 (34.4%)

전남일보에는 3월 16일자 등 6일에 걸쳐 모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부각시키면서 다른 후보들 중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경고조치 됐다. 이 신문은 이 지역에서 행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을 보도 하면서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도해 지적되기도 했다.

눈에 띄게 특정정당의 선거활동상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거나 특정지역구에 한정해서 후보를 부각해서 보도한 지방일간신문이 공정성 및 형평성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사례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에서 발간되는 「일간경북」은 4월 6일자 신문 1면에 특정정당이 경북지역에서 펼친 선거관련내용을 4건이나 사진과 함께 보도해 경고조치 됐는데 이 신문은 특정정당의 선거와 관련되는 사진을 3개 면에 3장이나 게재해 사진게재기준(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5조, 언론사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 게재 시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해야 한다)을 어겨 경고 조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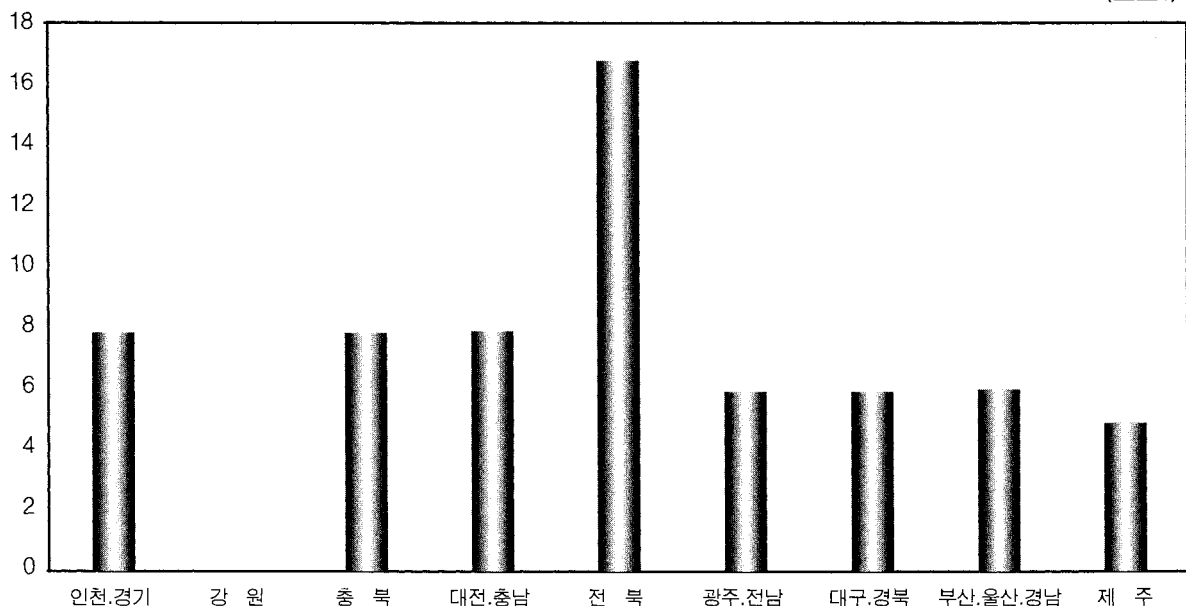
수원에서 발행되는 「경인매일」은 평택지역의 특정후보 4명을 나흘에 걸쳐 부각보도 함으로써 네 차례 경고 조치됐다.

한편 지방일간신문들의 지역별 지적율을 보면 전북지역의 신문 5개중 4개가 17건 지적됐고 제주지역은 3개 신문 모두가 1,2차례씩 모두 5건에 걸쳐 지적됐으며 강원지역의 2개 신문은 한 건도 지적되지 않았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신문 등은 각기 지역별로 여섯 차례씩 지적됐고 인천·경기, 충북, 대전·충남지역 신문들은 각각 여덟 차례씩 지적됐다. <도표1>

지방일간신문의 지역별 지적현황

<도표1>



3. 주간신문, 주간지, 통신

중앙과 지방을 망라한 주간신문의 경우 13개 매체 모두가 15회의 공정성 및 형평성기준 위반기사로 지적되어 경고(12건 80%) 또는 주의(3건 20%)조치 됐다.

주간지 뉴스피플은 통신인 연합뉴스와 함께 여론조사 보도요건미비로 각각 1회씩 지적됐다.

주간지를 포함한 주간신문은 모두 16건의 제재 조치를 받았는데 이 중 12건이 경고조치(75%), 4건이 주의조치(25%)됐다. <표6>

주간신문(주간지 포함)의 위반유형과 결정내용

<표6>

매체명	항 목	위 반 유 형				결 정	
		공 정 성 형 평 성	여 론 조 사 보도요건미비	여 론 조 사 결과공표금지	상업광고제한	경 고	주 의
주간내일신문	1	1				1	
일 요 시 사	2	2				1	1
일 요 서 울	1	1				1	
주 간 현 대	2	2				2	
전북일요시사	1	1				1	
주간고향신문	1	1				1	
새 거 제	1	1				1	
리 빙 타 임 즈	1	1				1	
정 읍 신 문	1	1					1
주간남원일보	1	1				1	
울산내일신문	1	1					1
주간전주전북내일신문	1	1				1	
주간전북남서부내일신문	1	1				1	
뉴 스 피 플	1		1				1
계	16	15	1			12	4

제3장 심의대상기사의 유형별 분석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제재결정한 대상은 선거관련 여론조사·기사·제목·사진·광고였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표밭의 민심을 재는 잣대로서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의」와 「경고」 조치된 여론조사는 모두 20건이었다.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유권자들의 그릇된 선택을 유도할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조치한 4·13총선 기사57건, 제목4건, 사진11건, 광고1건은 크게 나눠 「특정후보 손들어주기」「특정정당 편들기」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주의·경고 조치한 이 기사들을 유형별로 묶어보면 <도표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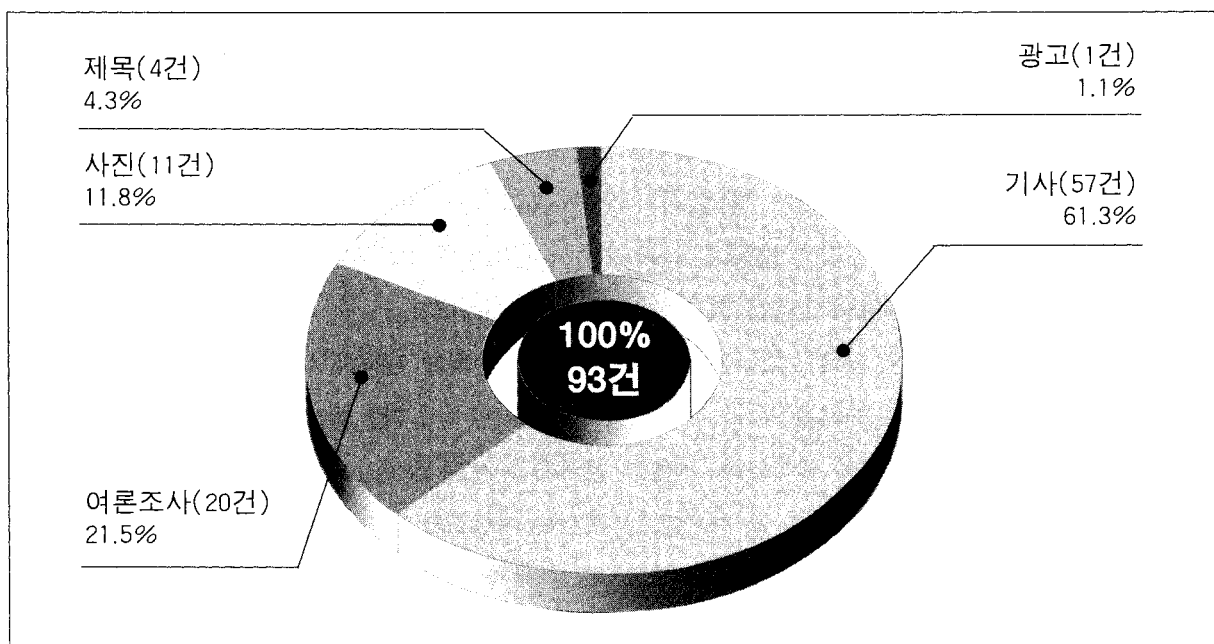
1. 여론조사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특정기사를 제재조치한 사유를 밝히는 「결정」가운데 여론조사결과보도에 대한 논리는 한가지뿐이다. 언론사는 유권자에게 신뢰를 주어야하며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결국 선거의 공정성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여론조사결과보도는 정보의 정확성, 유권자의 신뢰성이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여론조사가 갖는 절대요건을 압축해놓은 표현이기도하다.

조치 대상의 유형

<도표1>



제16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인쇄매체의 여론조사결과 보도가 이 같은 절대요건에 충실했는지는 의문을 앞세우는 것이 일반론의 양상이다. 「실패작」이라고 단정짓는 시각도 있다. 정확도의 잣대인 「%」가 널을 뛰다시피 해 종잡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 때문이다.

가. 조사수치의 널뛰기 현상

한나라당 공천 파동을 계기 삼아 실시했던 한 여론조사 결과가 「%」의 널뛰기현상을 예증해준다. 이때 “한 조사에서는 서울에서 정당별 지지율이 민주당 26.2%, 한나라당 22.5%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기사는 이와 함께 “또 다른 조사에서는 민주당 30.4%, 한나라당 20.3%로…”라고 썼다. 똑같은 기사 안에서 두 정당의 지지율이 얼추잡아 4~10%나 차이가 난 것이다. ‘한 조사’와 ‘또 다른 조사’의 편차가 이렇게 심한 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 이런 현상은 줄곧 유권자들의 판단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후보 자신의 판단까지 흐리게 하는 일도 있었다. 어느 후보는 신문에 난 “각종여론조사”가 자신의 “우세”를 보도했다며 “승리를 낙관한다”고 느긋한 표정을 짓더라고 보도된 일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각종여론조사”가 “10% 전후로 앞서고 있다”고 전한 까닭이었다.

10% 안팎이란 숫자는 낙관의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근소한 차이”란 기사 속의 표현에도 가슴을 찡찡하게 하는 후보의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다. 근거가 막연한 여론조사 보도에도 울고 웃는 선거관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나. 서로 베끼기 여론 조사결과

인쇄매체가 단독으로, 아니면 전문기관과 손을 잡고 여론조사를 했거나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를 전재했다면 출처문제는 해결된다.

4·13총선의 여론조사를 다룬 기사들 가운데 가장 흔하게 발견된 사례가 어정정한 여론조사주체였다. “최근 공개된 한 여론조사” “각종여론조사” “최근 실시된 각종여론조사” “상당수 여론조사” “…”는 가장 흔하게 읽을 수 있었던 여론조사 주체의 「이름」이었다.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다른 신문을 베꼈음을 실토해야만 하는 표현들이었다. “최근 공개된 한 일간지 여론조사”라는 표현이 그 일례다. “한 일간지 여론조사결과”는 독자적인 조사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표현일 수밖에 없었다. 여론 조사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재정 형편이 어려운 인쇄매체들의 고충을 읽을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가장 딱한 대목은 케케묵은 자료, 그나마도 남의 자료를 버젓하게 인용한 사례였다. “지난달 중순께 한 여론조사기관이…”라고 쓴 기사를 보자. 이 신문을 발간한 날짜가 3월 8일이었으니 여론조사를 실시한 지 20일이 넘은 결과를 인용한 셈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판세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지난달 중순께”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판세 “압축”을 보도한 이 기사는 여론조사의 한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경합”을 보도하는 판세분석에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눈길을 줄 것인지 여론조사보도의 현주소가 감지된다.

2. 선거기사

선거관련기사에서 '흠'을 찾아낼 때 한가지 기준에만 맞춰 칼로 무자르듯 나누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한가지 기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고리처럼 서로 맞물려 있는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의 복합현상이 시각에 따라 유형분류를 어렵게 하는 게 사실이지만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조치한 기사 가운데서 공통된 내용을 간추려 몇가지 유형을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지역거물 양성론

선거철이 되면 어느 곳에서나 “내 고장의 인물을 키우자”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평소 소외감을 지녀 온 곳일수록 이런 주장이나 호소는 많고 때로는 설득력도 가져 표물리와 연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어디까지나 정당이나 후보 쪽에서 나와야 한다는 제한이 따른다.

냉철한 눈길로 선거상황을 지켜 봐야하는 언론매체가 공정성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음은 긴 말이 필요치 않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정서에 편승한 기사의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

지난 2월 자민련의 2차 공천자 명단에서 당내 두 중진급의 이름이 빠지자 한 신문은 이들을 “버팀목” “정치적 거물” “정치적 좌장”이라며 드러내놓고 지지했다.

무대접, 푸대접에 가슴앓이를 해오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정치적 거목을 키워 중앙정치무대에서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는 논조였다.

이 신문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될 역량있는 정치인의 공천 탈락설에 허탈,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역정서를 전하면서 “토사구팽 시킴은 간교한 정치 공작”이라고 까지 썼다.

전라도 지역의 한 ‘친여 무소속’에게는 “당을 초월 인물 키우자”는 제목까지 붙여졌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자연스럽게 지역 감정의 해결사 역할을 맡게된다”는 논리까지 동원된 기사였다. “호남이 키울 인물로 부상”했다는 어느 무소속후보의 인터뷰 기사는 “마치 바짝 마른 스펀지와 같은 흡수력”이라고 그의 정치력을 떠받든 사례도 있다.

나. 특정후보에 全面할애

인터뷰나 특집형식으로 지면의 한 페이지를 통째로 차지한 기사는 모두 18건이었다. 이런 스타일의 기사를 한꺼번에 5건까지 다룬 매체도 있다보니 이곳 저곳에 「겹치기 출연」한 후보도 있다.

모두 경고 조치된 이 기사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후보들을 침이 마르게 치켜 올린 점이다. “차세대 지도자로 급부상한 정치인”이라고 소개된 한 후보는 “국가지도자로서 정치력을 확실하게 검증 받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고 미화됐다. “중부권의 맹주로 나서 새정치의 실현을 주도할 수 있는 책임자”도 나타났다. 어느 신문이 “의리과” “무공해 정치인”을 한 페이지를 통째로 내어 소개한 바로 그 날 같은

지역에서 나오는 다른 신문은 다른 정당의 후보를 “농촌수호의 선봉장”이며 “흔들림 없는 정치철학”이 “호평”받고있다고 지켜 올렸다. 후보의 인물검증이 목적인지 찬양홍보가 목적인지 아리송한 인터뷰들이 었다.

이러한 인물표현을 하면서도 후보들에게 자기선전을 할수 있도록 유도한 질문까지도 눈에 띄었다.

질문① “지역을 위해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실천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몇가지 사례를 꼽는다면”

질문② “소탈한 성품과 부지런한 일꾼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상을 소개한다면”

다. 무소속 공방

제16대 국회의원선거만큼 무소속후보들에게 눈길이 많이 쏠린 선거도 드물었다. 전라도지역의 무소속 후보에 대한 관심은 어느 곳보다도 클 수밖에 없었다.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마다 「친여」를 앞세우고 나선 까닭이다.

이 때문에 ‘무소속 잠재우기’란 제목이 등장할 만큼 집권 민주당은 속앓이를 해야했다. 그 반증의 하나가 집권당의 사무총장 입에서 터져 나온 “무소속후보들은 더 이상 金心을 팔지 말라”는 경고였다. 무소속후보들이 대부분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다짐한데 대해서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을 박기까지 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무소속후보 추어올리기가 끈질기게 계속됐다. “본인의 거둬진 고사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협박(?)에 가까운 압력에 의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는 어느 후보는 “호남이 키울 인물”로 떠받들어졌다. “승세가 갈수록 탄력을 받아 가는 분위기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라고 표현된 어느 무소속후보는 “선거관도를 장악할 주요변수로 대두됐다”고 높이 평가됐다.

라. 지역사랑-지역개발

선거에서 지역개발 업적이 득표요인으로 작용하는 비중은 매우 높게 평가된다. 때문에 선거철에는 실현가능성도 없는 장미빛 공약이 홍수를 이루다시피 하는 일은 이미 눈에 익은 현상이 된지 오래다.

그런데도 후보들의 지역사랑호소와 지역개발공약은 선거때마다 늘 뜨겁다. 어느 후보는 1995년 평택시와 송탄시, 평택군이 통합될 때부터 삭발과 단식으로 반대 투쟁을 벌였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도 “정치논리에 따른 통합반대”를 외치며 “송탄독립” 한가지만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것은 특이한 공약이지만 후보들이 표몰이에 나설 때 즐겨 쓰는 미끼가 지역개발 업적이다.

행정요직에 앉아 있었거나 다선의원일수록 이에 따른 자랑거리는 늘어난다. 어느 다선의원이 특정구간 “국도의 안전시설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상자기사를 한 신문이 실었다. 이 신문은 19일 뒤엔 이의원이 예산을 확보해 00중학교 강당을 완공하게 된다고 또 보도했다.

중부권의 어느 의원은 “지역발전 사업유치에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이웃한 타도를 위해서까지 일했다

고 확인 안된 업적까지 나열한 신문도 있다. 어느 신문은 특정후보가 자신의 공약인 경마장 조기 착공을 다짐받기 위해 득표운동은 제쳐둔 채 중앙당으로 달려갔다고 보도한 사례도 있다.

마. “큰 인물로” 홍보전략

선거에서 후보의 이름 알리기는 득표의 기본으로 꼽는다. 이 때문에 후보마다 지명도의 높낮이와 관계 없이 나름대로의 홍보비법개발에 머리를 싸매게 마련이다. 무명후보는 이름 알리기에만도 바쁜 상황이지만 이름 깨나 알려진 후보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홍보전략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은 흔히 볼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스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요즘 세상에서 인쇄매체는 훌륭한 무기일 수밖에 없다. 기사의 표현이나 크기는 당연히 잣대를 댈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 지면의 절반이나 되는 크기로 부각시켜 보도된 후보 가운데는 집 앞마당에 천막을 쳐놓고 하루 10만원으로 선거를 치르는 후보도 있어 기사속에는 ‘신선’이란 표현이 여러차례 되풀이 됐다. “3전4기”라는 어느 후보에게서는 “부동층 동정론이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는 표현이 발견됐다.

정치권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후보들이 크고 작은 상자기사 속에 갖가지 내용이 소개돼 홍보의 효과를 높이는 과정이 눈에 띄게 드러났다.

“국민의 정부실세답게... ‘힘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주민의 숙원사업인 다리 건설을 해결했다는 어느 후보를 다룬 글의 한 대목이다. 구제역 예방 자원봉사에 나선 어느 중진의원 선거운동을 다루면서 “현지에서 돼지고기와 소고기 시식회를 가져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쓴 글도 있었다. 이 후보의 축산단지방문은 “시름에 잠겨있는 축산인들에게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게 이 신문의 판단이었다.

후보 추어올리기는 「대권주자」론도 한 몫 했다. 전주의 민주당후보 2명은 장차 대권경쟁자로 이미 활자화됐다. “첫 승부처는 16대총선, 2차 승부처는 당권과 대권”이란 논리였다. 이 기사는 “누가 먼저 승리의 축배를 들것인지 이제부터 본 게임은 시작됐다”고 마침표를 찍었다. 장날 개인연설회를 가진 어느 무소속 후보를 다룬 기사 속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있었다.

“많은 인파가 몰려 인기를 실감케 했다”

바. 확인 안된 사실보도

선거철엔 어딜가나 소문이 판을 친다. 그 소문이란 것은 출처 자체가 분명치 않은데다 소문이 소문을 낳는 것이 보통이다. 게다가 믿음성까지 없지만 그럴싸하게 들리는 데다 흥미까지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파괴력이 대단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공정성이 생명인 기사가 만일 이 같은 속성을 지닌 소문을 근거로 작성된다면 이로 말미암은 결과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제16대 국회의원선거 기간중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해 '경고'조치된 사례들이 있다. 복역중이던 오성수 전 성남시장이 선거기간 중에 이례적으로 가석방되자 정치권이 비상한 관심을 보인다는 내용이 그 첫 번째 사례로 꼽힌다. 그 파장을 어떻게 분석하든 중요한 것은 기사 스스로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의하면 분당구에 출마한 여권후보가 이러한 성남시민의 정서를 파악, 정부 고위층에 오시장의 석방을 적극 권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야권 후보자들의 대응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관련 미니 해설기사도 마찬가지로였다.

“특히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분당 여당후보자가 가석방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이 분분하면서 오 전시장의 행보와 야당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 주간신문은 '민주당 관련자들의 병역의혹자료'란 제목을 붙여 병역의혹대상자 17명의 명단을 도표로 보도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자료를 그대로 실은 것이었다. 이 기사 역시 자료에 객관성이 없음을 실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발표 내용 가운데 일부 참고자료의 내용이 틀린 것으로 전해져 향후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3. 제 목

제목의 힘은 그 크기와 내용에 따라 읽는이가 받아들이는 메시지의 강도를 좌우한다. 특히 2등이 필요없는 선거판에서 선거기사의 핵심을 짚은 글로 압축해 놓은 제목의 영향력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제목이 특정후보와 특정정당에 치우친 느낌을 줄 경우 이로 말미암아 경쟁 상대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기사 심의에 있어 큰 관심거리였다. 이런 측면에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기사의 제목 가운데 심의의 잣대를 댄 것은 모두 4건이다. 다음이 제재조치된 제목들이다

〈사례1〉 자민련 김학원의원 부여총선 승리다짐
JP 아성 업고 '승승장구'
정용환변호사·조일호 전 농림부차관 격전 준비

〈사례2〉 탈당하면서 입당을 운운한 것은 원칙 없는 정치인
조찬형의원 “당원단합대회” 총선앞으로

〈사례3〉 **JP 총청권 수성 전력**
이한동총재등 수뇌부 총동원...지연 민심잡기 박차
DJ·이인제위원장에 맹공펼쳐

〈사례4〉 “경험과 역량 갖춘 김기춘 후보지지”

제목 속에 특정후보의 이름과 함께 ‘승승장구’와 ‘승리’란 표현이 들어있는 기사는 읽지 않아도 총선 승리자를 험사리 머릿속에 그리게 하는 힘을 발휘한다. ‘자민련’ ‘부여’ ‘JP아성’이란 굵은 활자들의 행진이 독자들에게 던져줄 힘의 파장은 예상하고도 남는 대목이다.

〈사례4〉처럼 후보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고 뒤에 지지를 붙인 경우라도 다를 건 없다.

탈당한 특정후보의 이름이 제목에 나타나지는 않았다 해도 누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칙 없는 정치인”이라는 비난이 굵은 활자로 반영된 〈사례2〉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민련과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함께 다룬 기사인데도 자민련의 텃밭지키기 활동만을 제목으로 부각시킨 〈사례3〉도 한 곳으로만 치우친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이렇듯 특정후보,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느낌을 한눈에 주는 제목과 엇비슷한 제목들은 곳곳에서 눈에 띄게 사실이다.

4. 사 진

사진의 불공정 사례는 특정정당·특정후보의 사진을 같은 날짜 여러 지면에 동시에 쓰는 방법, 특정후보 또는 특정정당의 사진만 쓰는 방법이 꼽혔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경쟁상대들의 사진은 모두 지면에 게재하면서 특정후보나 특정정당의 사진만 빼버려 차별하는 방법 또한 눈에 띄었다.

신문사측의 인력이나 지면 사정이 복합적으로 얽힌 때문도 있겠으나 지면에 나타난 결과만을 놓고 보면 사진이 문제가 된 경우는 11건에 이른다. 후보 가운데는 같은 날짜 다른 지면에 자신의 사진이 2~3개씩 실린 사람도 있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같은 얼굴이 발견되곤 했다.

큼직한 사진을 여러장 쓸 수 있는 대형 인터뷰는 선전효과가 더욱더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 후보의 인물사진을 반드시 곁들여 구색을 갖추는 인터뷰 기사 가운데 전면용 차지한 18건은 사진을 보통 3~4개씩 실었다. 전면인터뷰 기사에 실린 인터뷰 사진 가운데 눈에 띄는 대로 한 장을 골라 길이를 재본 결과 가로 11cm, 세로 17.5cm로 나타났다. 반드시 이 사진만이 아니고 전면 인터뷰에 실린 후보의 인물사진은 이처럼 어른 손바닥 넓이 만한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가하면 증명사진보다 조금 크게 쓴 인물사진조차 야당후보는 숫제 빼버린 신문도 있고 촬영각도가 거의 똑같은 여당쪽 회견 사진을 양쪽 지면에 실은 신문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선거때 마다 볼 수 있는 현상이라 해도 사진보도에도 「동서현상」이 나타난 것은 가장 눈길이 가는 대목이었다. 경상도 쪽의 어느 신문은 한나라당 사진만, 전라도 쪽의 한 신문은 민주당 사진만 각각 3장씩 보도했기 때문이다.

제4장 위반 유형별 분석

선거관련기사의 관련법규 저촉은 공정성위반이 출발선이었다. 도마 위에 오른 93건 가운데 76.3%가 공정성·형평성위반이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마디로 뭉뚱그렸을 때 공정성·형평성위반이지 이를 유형으로 나눠보면 선거기사가 저지르는 「반칙」은 「차별」이 그 밑바탕임이 드러난다. 소속정당과 그 후보에 따라 지면 배정을 차별하고, 기사분량을 차별했다. 제목의 내용과 크기를 차별했고 사진계재를 차별했으며, 판세판단을 차별했다. 한쪽에 유리하게 쓰면서 다른 쪽에 불리하게 쓴 기사로 의도를 드러냈고 슷제 특정후보와 정당의 존재자체를 묵살해 버려 지면에서 추방해버린 사례도 자주 눈에 띄었다. 특정정당과 후보의 득표활동을 더 많이, 더 자주, 더 크게 보도하느라 지역색을 감추지 못한 사례도 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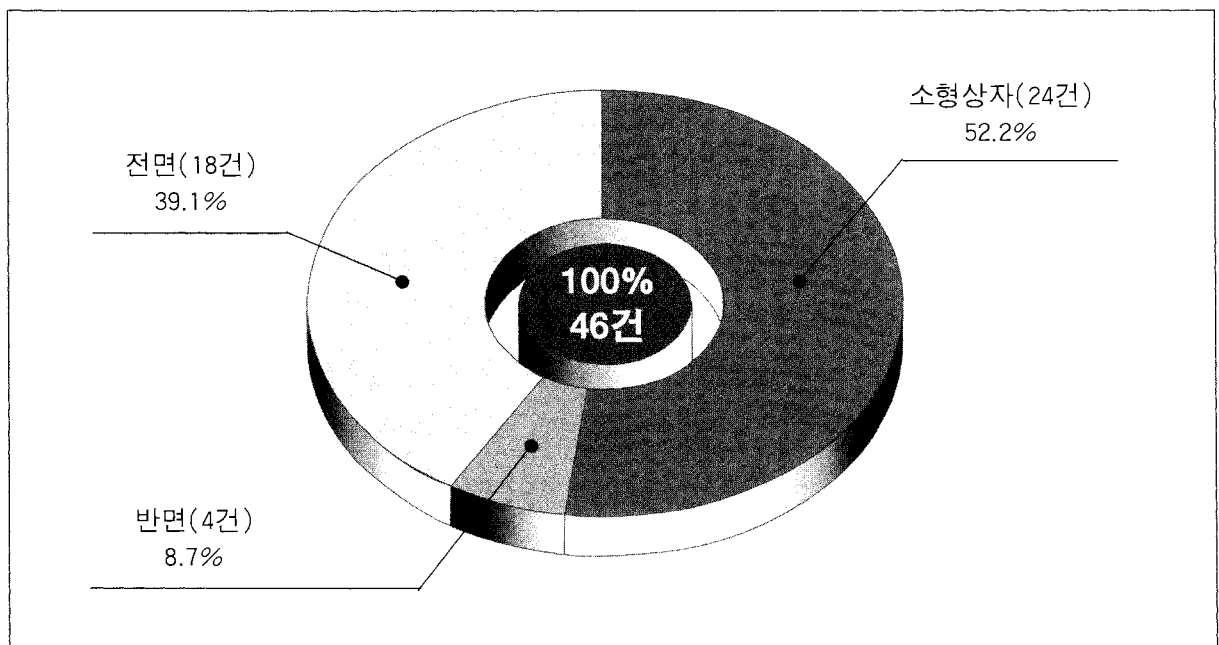
1. 공정성·형평성

가. 상자기사

공정성·형평성위반은 전면이나 반면을 할애한 인터뷰와 기획, 특정후보만을 주어로 삼은 상자기사에서 가장 끈질기게 드러났다. 날마다 읽을 수 있는 기사였던 까닭이다. 전면 인터뷰 18건 가운데는 2개 지면을 특정후보가 독점한 사례도 있고, 특정후보가 2차례 등장하기도 했다.<도표1>

특정 후보 기획물 분포도

<도표1>



이 후보들을 소속별로 나눠보면 민주당 8건, 한나라 2건, 자민련 4건, 무소속 4건이었다. 지면의 절반을 차지한 4건은 자민련 1, 무소속 3건이었다.

이것들과 비교하면 소형급일 수밖에 없는 상자기사는 지구당대회때 가진 인터뷰를 제쳐놓고도 24건이나 됐다. 대형물과 마찬가지로 특정후보만이 주어인 이 소형상자기사의 주인공을 소속별로 먼저 살펴보면 민주당 11건, 한나라당 6건, 자민련 2건, 무소속 5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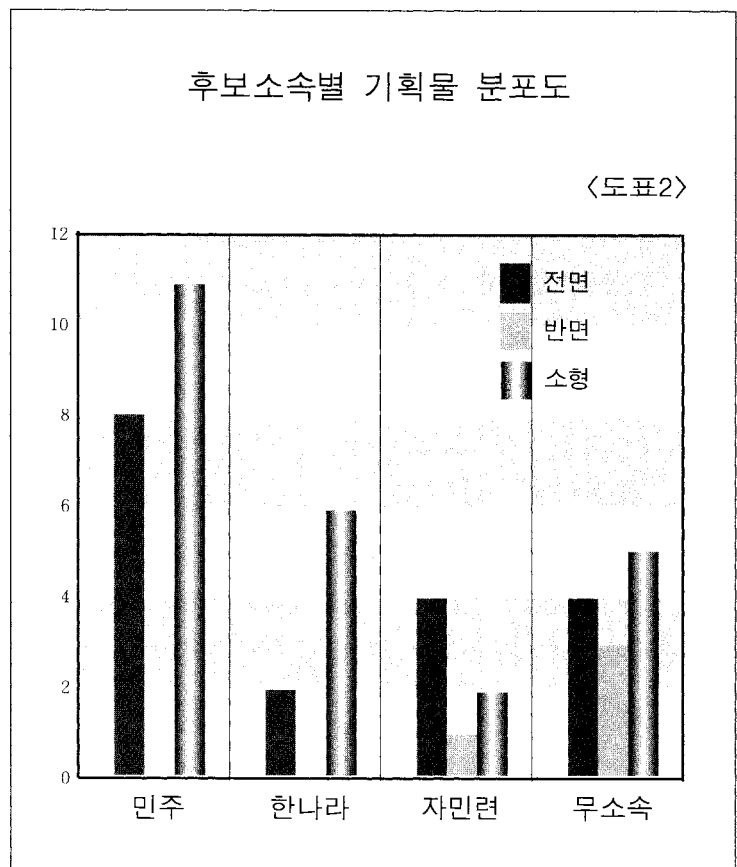
전면이건, 반면이건, 소형물이건 크기와 관계없이 이들 기사가 지니고 있는 공통점은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찬양보도가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 현상이다. 특정후보의 지역개발 공약이나 업적, 정치인으로서의 야망표명, 유별난 행동같은 것들이 소재가 되어 상자기사로 다루어진 사례가 많았다. 또한 스케치 기사를 모아놓은 지면에서 특정후보만을 별도기사로 다뤄 눈에 띄게 차별화를 시도한 것만도 3건이나 발견됐다.

이 같은 기사들은 편집된 크기에 관계없이 경고나 주의 조치됐지만 평상시의 시각으로는 문제삼을 수 없는 내용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기사화된 시기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선거철이었다는 점을 간과했거나 묵살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인 것만은 분명하다.

나. 지면 물량배정

지면에서 읽는 이의 눈길을 잡는 가장 두드러진 방법은 같은 주제를 가진 관련기사를 여러 지면에 걸쳐 '응단 폭격'하듯 깔아 나가는 것이다. 이 방법을 선거관련기사에 적용하면 읽는 이는 지면을 넘길 때마다 특정후보의 이름과 사진을 읽고 보게 마련이다.

이런 현상은 지구당대회를 계기로 가장 자주 볼 수 있었다. 총선 종합스트레이트, 지구당대회 스트레이트, 지구당위원장 인터뷰, 선거구의 출마후보 소개, 스케치, 중앙당직자 인터뷰, 도 선거대책위 현판식 같은 기사들을 사진물을 곁들여 화려하게 편집해 놓으면 기억에 남게 마련이다. 이 방법으로 3개 지면을 차지한 민주당후보가 2명이나 있었다. 어느 신문은 한나라당의 3개 지구당 행사가 같은 날 열리게 되자 무려 5페이지를 이 행사로 도배하다시피 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런가하면 어느 신문은 가장 많은 지면을 특정후보를 위해 하루나 이틀씩 사이를 두고 여섯차례에 걸쳐 무려 11개 지면을 꾸민 일도 있다. 가장 많은 물량이었고 가장 많은 조항위반이었다.



지지하는 후보가 무소속이었던 이 신문은 지구당대회 대신 여론조사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소재로 무소속에 유리하게 지면을 꾸며나갔다. 경쟁상대가 낙선운동대상이었던 까닭이다. 따라서 경고 조치된 이 기사들에게 적용될 법조항은 선거법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의 공정성·형평성·객관성·사실보도조항으로 가장 많을 수밖에 없었다.

특이한 것은 해당 지역의 후보가 아닌데도 그 지역 출신으로 유일하게 타향에서 출마하는 후보를 집중 지원한 사례다. 이 후보는 선거사무실 개설에서부터, 출판기념회, 후원회에 이르기까지 무려 6차례나 지면에 소개됐다.

다. 기사차별

공정하지 못한 기사의 표본 가운데 한가지가 기사분량을 차별하고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의 기사를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배정하는 방법이다.

지역의 중진급 인물 2명이 공천에서 계속 보류되자 어느 신문은 이들의 공천을 촉구하는 기사 8패러 그래프 가운데 4패러그래프와 1패러그래프를 이 두사람을 감싸는 내용으로 썼다. 다른 공천 신청자들에게 공정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사이에서조차 균형을 잡아주지 않은 셈이다. 자민련 후보의 우세를 보도한 어느 기사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후보를 언급한 기사분량이 3 : 1 : 1로 조율된 사례도 발견됐다.

그런가하면 자민련 후보가 푸대접을 받은 사례는 같은 선거구에 후보등록을 마친 두 후보의 출정식을 다룬 기사에서 드러났다. 같은 날 같은 시각 각자의 선거사무소 옆 공터에서 가진 출정식이었던만 그 차별은 한눈에 드러났다. 무소속 후보는 6면에 4단 상자로 행사사진까지 곁들여 보도된 반면 자민련 후보는 12면에 1단 상자로 다뤄졌다. 사진의 크기와 숫자, 제목의 크기와 내용 또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났다. 한마디로 자민련 후보는 무소속 후보의 4분의 1수준이었다.

경기·인천지역 정당 연설회에서 한나라당을 우대한 기사는 1면과 3면에서 발견됐다. 하루전 열린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3당의 정당연설회를 3면에 함께 모아 다룬 이 기사는 균형이 잡혀있었다. 문제는 1면에서 드러났다. 하루 뒤에 열린 한나라당의 인천지역 연설회만을 1면에 따로 행사사진까지 곁들여 큼직하게 보도한 때문이었다.

한나라당 「특수」의 극치는 기사 4건과 사진 1장을 1면에 집중배치해 도배하다시피한 지면이었다. 이 신문은 이회창 총재의 경북 유세, 선대위 정책위원장의 회견, 달성경찰서 항의방문, 민주당 후보 수사촉구 기사와 함께 선거대책을 협의하는 사진을 1면에 실었다.

민주당후보가 또한 1면에 부각보도된 사례의 하나는 의정보고회 기사였다. 예정된 의정보고회가 사진까지 곁들인 상자기사로 눈에 띄게 보도된 때문이었다. 그 컷이 '4·13하이라이트'였다. 민주당 후보기사가 자민련 후보의 10갑절이나 되는 사례는 사진과 제목도 공정치 못했다. 기사분량은 민주당 후보 40행, 한나라 후보 6행, 자민련 후보 4행으로 겨우 구색은 갖췄으나 사진과 제목에서 두야당 후보는 숫제 제쳐놓아버린 불균형의 극치였다. 연설회에서 특정후보만을 골라 별개의 상자기사로 다룸으로써 읽는 이의

눈길을 잡는 것 또한 이미 고전이 돼버린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

라. 제목에 이름쓰기

이 사례의 가장 큰 특징은 제목에 특정 후보의 이름을 명시하는 것이다. 후보들이 득표활동의 기본무기로 이름을 알리고 기억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지면에 굵은 활자로 나타나는 이름이야말로 큰 힘이 돼주는 원군과 다름없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후보자가 여럿일 때 특정인의 이름만 가장 크게 쓰고 나머지 사람들은 더 작은 제목으로 써서 차별을 시도한 기사들이 있었다. 이럴 경우 큰 제목과 작은 제목이 주는 인상의 차이가 후보들에게 미칠 영향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후보로 꼽히던 사람이 출마를 포기하고 특정인을 밀기로 세를 합칠때나 정당모임에서 자당 후보의 선출을 호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OOO지지”라는 제목이었다. 이럴 경우 이 기사를 읽는 사람은 자신은 마치 OOO를 지지하는 듯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게 마련이다. 제목 글씨가 클수록 본인에게 유리하겠고 자연히 경쟁상대들은 불리해질 수도 있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특정후보를 면담하는 외국인의 입을 빌어 특정후보의 이름을 제목으로 쓰거나 후원회장 이름앞에 특정후보의 이름을 밝혀 기억케 하는 방법도 눈에 띄는 현상 가운데 하나였다.

마. 특정당(후보) 차별

같은 날짜에 나온 신문의 같은 지면 기사에서 특정당이나 특정후보만 부각시키는 방법은 형평성을 잃은 편집의 으뜸이다. 이에 대조되는 방법이 특정당이나 특정후보 관련 기사를 순제 누락시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특정당이나 특정후보 관련 기사는 유리하게 쓰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의 기사를 불리하게 쓰는 방법도 발견됐다. 또한 선거철이 되면 경쟁상대들끼리 비난하고 헐뜯는 일이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게 상례가 돼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쪽의 주장에만 초점을 맞춰 쓴 기사는 자연히 한쪽 편으로 기울어 형평성을 잃게 마련이다.

이번 선거 관련 기사에서도 이런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사들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일례로 총선 스케치 기사로 넓은 지면을 채우면서 특정당(후보)에 유리하고 불리함이 느껴지는 기사들이 여러개 나타났다. 스케치 기사를 7건 실으면서 3건은 한쪽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나머지 3건은 다른 쪽에 불리한 내용으로 쓴 유형이 그 하나였다. 한쪽에서 특정지역의 지명을 잘못 쓴 홈페이지를 띄우자 이를 사진으로 찍어 실은 것이 그 사례. 그러나 다른 쪽의 기사는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약을 제시하는 모습을 전달해 대조되는 느낌을 누구나 갖게 했다.

스트레이트 기사도 마찬가지로였고 인터뷰 기사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무소속 후보는 찬양일색으로 추어 올린 반면 경쟁상대와 관련해서는 “지역구 관리에 소홀했다”거나 “약점이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들춰지고

있다”고 표현한 내용이 그 한가지 사례로 꼽힌다.

그런가하면 특정당이 무소속에 포문을 열자 이 상황만 부각시켜 보도했을뿐 대항수단이 약한 무소속의 항변은 단 한마디도 반영하지 않아 무소속은 꼼짝 못한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례도 있다.

선거날 아침 3당 도 선거대책위원장들의 마지막 지지호소를 다루고도 다른 지면에 특정정당 선거대책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눈에 띄게 보도한 사례도 또 다른 예증거리로 꼽혔다. 아들의 병역비리 혐의로 곤경에 빠진 특정후보의 상황을 크게 다룸으로써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게 한 일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례로 남는다.

바. 특정인에 맞춘 판세

선거관련기사 가운데 정당이나 후보의 우열보도는 무엇보다도 객관성을 갖춘 근거가 필요하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야만 기사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까닭이다. 그런데도 현지 취재형식으로 쓴 기사가 가끔 드러내는 맹점은 객관성을 띤 자료제시가 없다는 점이다. 다만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의 판단력을 근거삼아 특정당과 후보의 판세를 기사화 하는 일이 있다. 이럴 경우 취재한 내용을 자신의 판단에 맞춰 재단하기가 십상이다.

이런 유형의 기사가 제시하는 소스는 “선거전문가” “당관계자” “택시운전사” “시민”인 것이 보통이다. 물론 이들의 판단이 모두 맞는 것도, 틀리는 것도 아니지만 자칫하면 특정한 쪽에 기울었다는 오해를 받기 쉬워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씩어도 준치”라며 거물급 정치인의 승리를 장담한다거나, 단지 지역정서만 믿고 「희망사항」을 예단한 기사들이 그 실례로 꼽힌다.

2. 여론조사

가. 보도요건미비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조치한 선거관련 여론조사 가운데 보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기사는 모두 14건이었다. 관계법규가 요구하는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요건은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 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이다. 이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가 어느정도 믿을만한가를 유권자가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가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신문제작의 현실여건은 그렇지 못한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등에 신축성을 두고 심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3월 5일부터 17일 사이에 모두 14건이 주의 조치 됐고 보면 얼추잡아 하루에 1건 꼴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자체조사팀의 조사결과를 보도한 곳

도 있고 지면 사정이 빠듯한데도 질문내용까지 빠짐없이 밝힌 신문도 극소수일지언정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가하면 최소한의 요건조차도 갖추지 않은 보도가 꼬리를 물었던 사실은 우리의 현실에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선거철에 자주 지면에 등장했던 “최근 실시한 한 여론조사” 같은 표현은 보도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자기 고백의 다른 표현이었다. 기사 속에는 “뒤지고 있다”,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절반도 못 미치고 있다”와 같은 표현을 썼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요건은 “각종여론조사결과”라는 한마디로 얼버무린 사례가 가장 흔한 표본이었다. 그러잖아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여론조사인 판에 “각종”을 종합해 보도했으니 그 보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불신 표명을 예사롭게 들어 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신문들이 많이 사용하는 출처 제시방법 가운데 “각당의 자체 분석결과”가 있었다. “각종여론조사를 기초한 각당의 자체분석”이란 꼬리표를 달아 지역명, 후보별 판세를 분석한 이 보도도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지역신문을 비롯한 각종여론조사결과”라며 판세를 풀이한 어느 신문은 특정후보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라며 후보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사례도 있었다.

나. 결과보도금지

법규에 따르면 언론사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수 없게 돼있다. 그러나 이 제한 규정을 어겨 선거기사심의위가 조치한 보도는 모두 6건이었다. 이 가운데 5건은 후보자 등록기간인 3월 28일과 29일에 보도됐으나 1건은 선거일을 사흘 앞두고 나온 것이었다. 많은 신문들이 이 금지 규정을 의식한 듯 여론조사의 상징인 「%」는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막연하게 출처를 밝히는 방법은 큰 변화가 없었다.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구의 후보들뿐만 아니라 고향출신 배우자를 둔 다른 선거구의 후보들 근황까지 소개해가며 애항심을 북돋아 눈길을 끌기는 했으나 그 근거는 역시 막연한 “최근 각종여론조사”였다.

여론조사결과보도가 금지된 기간중의 한가지 특징은 각 선거구의 판세분석에 「%」대신 ‘우세’ ‘경합’같은 표현이 큰 흐름을 이뤘다는 사실이다. 이런 보도형식에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어느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합법성 여부를 질의한 일이 있다.

이 질의서는 “각 언론사의 판세 분석에서 나타나는 「우세·백중·백중우세·경합·추격」등의 후보자의 등급분류식발표가 출마자 본인은 물론 공직 후보자를 자유의사에 따라 선출해야하는 유권자 선택권의 공정한 행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러한 판세분석 발표는 선거법규정의 허용한계를 벗어났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답은 다음과 같았다. “일부 언론사의 총선 판세보도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였다면 이는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나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 단순히 각 정당이나 선거사무소 또는 현지분위기등을 취재하

여 보도하였다면 이를 위 법조항에 위반되는 보도라고 보기는 어려울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여론조사결과 보도는 법으로 금지하지만 기자의 취재보도는 막을수 없다는 이 회답은 논란의 여지를 해결해 준 것으로 평가된다.

3. 상업광고제한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갖가지 출판물을 내는 일은 원래부터 흔히 있는 일이다. 이 가운데서도 큰 흐름을 이루는 것이 이른바 '자전적 에세이'다. 이 자전적 에세이가 이번 심의기간 중 신문광고에 등장해 기사 심의에 오른 사례는 단 1건뿐이었다.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광고를 금지한 법규정을 어긴 까닭이었다.

"굴곡의 시대를 살아온 이 시대 정치인의 이정표"라는 선전문구와 함께 5단 광고로 나온 서적은 '용마루에 뜨는 달'이었다. 후보자의 선거구는 경남 지역이었으나 광고를 실어 경고조치를 받은 신문사는 인천에 자리잡고 있는 게 특징이었다.

서적광고가 문제된 사례는 유일한 것 이어서 관계법규를 소개해 본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영화·사진기타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4. 30>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7조 (상업광고의 제한)

①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